##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14

발의연월일: 2025. 5. 14.

발 의 자:최수진·김미애·김재섭

배준영 · 최보윤 · 정동만

박충권 · 김성원 · 김상훈

서지영 · 엄태영 · 박준태

김기웅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 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지속 회피하는 실정임.

이에 대형 CP 등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등).

법률 제 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부터"를 "제6호의2의 경우에는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제9호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적 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 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	제50조(금지행위) ①		
업자( <u>제9호부터</u> 제11호까지의	<u>제6호의2의 경우에는 제22</u>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	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u>로 한정하고, 제9호부터</u>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의2.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		
	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정보통		
	신망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